

#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(장난감도서관, 놀이체험시설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81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1. 27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(장난감도서관 5개소, 놀이체험시설 3개소) 위탁 운영 기간이 2026.5.26.로 만료됨에 따라, 육아지원 서비스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, 관내 보육 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 2(업무의 위탁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6조의 2(업무의 위탁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 3(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8조(위탁)
- 「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(위탁계약)
- 「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놀이체험시설의 운영위탁)

## 2. 위탁사무 내용

### ○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

- 어린이집·가정양육 지원(교육, 상담 등), 장난감대여,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등

### 3. 위탁시설 개요

○ 위탁시설 :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(장난감도서관, 놀이체험시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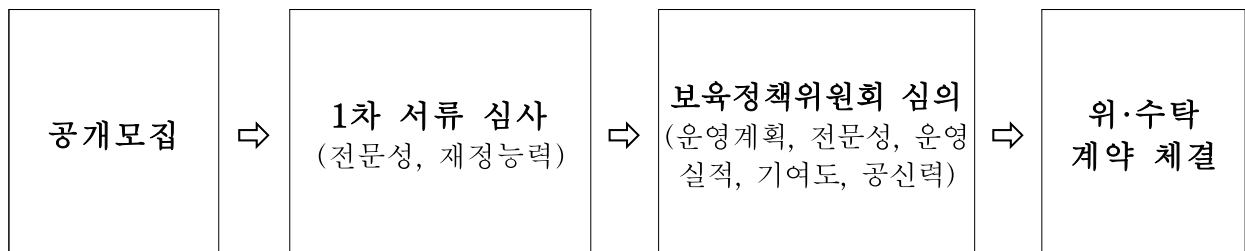
시설명		소재지		면적(㎡)	종사자수	개관일	
육아종합 지원센터	사무실, 교육실 시간제보육실 등		다산중앙로 82번길 106(다산동, 다산지급A5)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		1,010	54	2015.07.17.
	운영 시설	장난감도서관	호평	늘을2로 67(호평체육문화센터)	122	2	2014.03.22.
			진접	해밀예당1로 96(어린이비전센터)	146	2	2015.07.17.
			별내	별내3로 308(스마트시티 통합센터)	165	2	2016.09.01.
			다산	다산중앙로 82번길 106(다산지급A5)	142	3	2022.08.16.
			화도	마석중앙로 21-8	144	2	2024.05.28.
	놀이체험시설 (상상놀이터)	북 놀이터	별내3로 308(스마트시티 통합센터)	301	4	2016.09.01.	
		아이꿈 놀이터	월문천로 43(와부도서관)	72	2	2020.01.20.	
		도르르	늘을2로 67(호평체육문화센터)	1,004	5	2021.12.07.	

### 4. 민간위탁 기간

○ 2026. 5. 27. ~ 2031. 5. 26. (5년)

### 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(공개경쟁)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



## 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### ○ 위탁비용 및 산출근거

- 2026년 예산안 반영

(단위: 천원)

구분		예산액	비고
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	사무비(인건비 포함)	1,909,771	시비 100%
	재산조성비	187,229	
	사업비	393,000	
소계		2,490,000	

구분		예산액	비고
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(공통부모교육)		34,000	도50%,시50%
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배치		46,886	도30%,시50%
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		109,214	도50%,시50%
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인건비 지원		57,347	도30%,시50%
대체교사 인건비 지원		999,500	국60%, 도28%,시12%
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		41,253	국50%, 도25%,시25%
소계		1,288,200	

## 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분	검토의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도덕성, 법적 건전성,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수행하며, 일반적인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는 구분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○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운영 및 관리 가능

구 분	검 토 의 견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, 지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운영비 정산보고,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총 합 의 견	<p>○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, 가정양육지원, 장난감 대여사업, 놀이체험시설 운영 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육아지원 기관임</p> <p>○ 육아지원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발달의 조기개입 필요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중요시되어, 현장성이 뛰어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 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.</p> <p>○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</p>

## 9. 향후계획

- 2026. 2. :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6. 3. : 2026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

## 10. 기타사항

-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심사 기준표 [붙임 1]
- 관련 법령 [붙임2]

## 붙임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심사기준표

연번	심사항목	점수		내 용	평 가 기 준
		총점	배점		
1	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	30	10	1-1.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(정성, 2차)	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명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반 기능에 따른 사업계획
			10	1-2.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, 평가계획 (정성, 2차)	- 전반적 센터운영 및 관리, 평가계획
			10	1-3.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수립 적절성 (정성, 2차)	- 세입·세출에 대한 운영 및 사업예산 편성 적절성
2	센터장의 전문성	35	10	2-1.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(정량, 1차)	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[별표1]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
			25	2-2.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업무능력 이해 및 구비도 (정성, 2차)	- 제인발표로 센터업무 이해 및 센터장 역할 전문성 종합평가
3	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	10	10	3-1. 운영체의 복지·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(정성, 2차)	- 운영체의 최근 5년간 복지·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평가
4	운영체 지역발전 기여도	10	10	4-1. 지역특색사업 추진실적과 기여도 (정성, 2차)	- 최근 3년간 지역특색사업 추진 실적과 기여도 평가
5	운영체 공신력	15	10	5-1.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법적·도덕적 공신력 (정성, 2차)	-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최근 5년간 법적·도덕적 공신력 평가
			5	5-2. 운영체의 재정 건전성 (정량, 1차)	- 자산 및 부채현황

## 붙임1-2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심사기준표

### [1차 정량평가]

연번	심사항목	총점	내 용	평 가 기 준	배 점
	합계	15			
1	2. 센터장의 전문성	10	2-1.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	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[별표]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	10년 이상 : 9~10점  9년 : 8점 8년 : 7점 7년 : 6점  6년 : 5점 5년 : 4점
2	4. 운영체 공신력	5	4-2 운영체의 재정 건전성	- 자산 및 부채 현황	5억 이상: 5점  3억 이상~ 5억 미만: 4점  1억 이상~ 3억 미만: 3점  1억 미만: 2점

[2차 정성평가]

연번	심사항목	총점	내 용	평 가 기 준	배점
합계		85			
1	1.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	30	1-1.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(10)	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명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제반 기능에 따른 사업계획	우수: 9~10점 보통: 6~7점 미흡: 3~4점
			1-2.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, 평가계획(10)	- 전반적 센터운영 및 관리, 평가계획	우수: 9~10점 보통: 6~7점 미흡: 3~4점
			1-3.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수립 적절성(10)	- 세입·세출에 대한 운영 및 사업예산 편성 적절성	우수: 9~10점 보통: 6~7점 미흡: 3~4점
2	2. 센터장의 전문성	25	2-2.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업무능력 이해 및 구비도	- 소견발표로 센터업무 이해 및 센터장 역할 전문성 종합평가	우수: 23~25점 보통: 18~20점 미흡: 13~15점
3	3.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	10	3-1. 운영체의 복지·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	- 운영체의 최근 5년간 복지·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평가	우수: 9~10점 보통: 6~7점 미흡: 3~4점
4	4. 운영체 지역발전 기여도	10	4-1. 지역특색사업 추진실적과 기여도	- 최근 3년간 지역특색사업 추진 실적과 기여도 평가	우수: 9~10점 보통: 6~7점 미흡: 3~4점
5	5. 운영체 공신력	10	5-1.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법적·도덕적 공신력	-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최근 5년간 법적·도덕적 공신력 평가	우수: 9~10점 보통: 6~7점 미흡: 3~4점

## 붙임2 관련 법령

### 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 2

**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**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
### 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6조의 2

**제26조의2(업무의 위탁)**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3.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

### 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 3

**제39조의3(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**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3. 대표자의 경력사항
  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 5. 법인·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  6.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  7.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## 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의 변경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○ 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18조

**제18조(위탁)**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경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39조의3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.

## ○ 「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

**제11조(위탁계약)**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5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6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○ 「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 제6조(놀이체험시설의 운영위탁)

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놀이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